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안

의안
번호

381

발의연월일 : 2005년 12월 8일
발 의 자 : 박종갑 의원의외 8인

□ 제정이유

-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 협약 등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이념과 공공기관 등 에너지이용 주체별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여,
-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지역사회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도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제명 등은 「법령제명 띄워쓰기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
- 이 조례는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충청북도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도 및 시·군, 사업자, 도민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도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시·군은 관할지역의 특성을 참작하여 시·군 에너지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사업자는 도와 시·군의 시책에 대하여 협력한다(안 제4조 내지 제6조)
- 종합적인 에너지이용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안 제8조)
- 에너지계획을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수립을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이 대행할 수 있게 근거를 규정하고 전문가 및 민간단체가 참여한 『에너지위원회』 구성·운영
(안 제10조 내지 제15조)
- 에너지시책추진 및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시·군 및 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6조 내지 제20조)

의안전문 : 붙임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도 및 시·군, 사업자, 도민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①도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소비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에너지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도는 에너지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산업체, 도민, 시민단체, 학계, 연구기관 등과 최대한 협의하여야 한다.

③도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당해 지역의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라 함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라 함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적정하게 제공하는 실제적·정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3. "연료"라 함은 석유·석탄·가스·신·재생에너지·기타 열을 발생하는 열원(핵연료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온실가스"라 함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가스로서, 이산화탄소·메탄·아산화질소·수소불화탄소·과불화탄소·육불화황을 말한다.

5. “신·재생에너지”라 함은 태양에너지·풍력·바이오에너지·소수력·해양에너지·지열에너지 등 재생가능 에너지와 연료전지·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를 말한다.
6.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라 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 정부기관이 인증한 에너지 기자재를 말한다.
7. “사업자”라 함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장비 및 기타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를 말한다.
8. “환경표지 인증제품”이라 함은 동일한 다른 제품에 비하여 생산·유통·사용·폐기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인증 받은 제품을 말한다.
9. “자발적 협약”이라 함은 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이산화탄소의 배출감소를 위한 목표와 그 이행 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10. “산업부문”이라 함은 산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11. “수송부문”이라 함은 수송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는 제외한다.
12. “건물부문”이라 함은 민간 소유의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13. “공공부문”이라 함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정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14.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이라 함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제3자의 에너지이용 시설에 선 투자한 후 투자시설에서 발생한 에너지 절감액에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기업을 말한다.
15. “시민단체”라 함은 에너지절약·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시민참여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관련 연대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16.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이라 함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
17.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라 함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 사용신고 대상 사업자를 말한다.

제2장 에너지 이용 주체별 권리·책무 등

- 제4조(도의 책무) ①도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②도는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③도는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도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시·군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군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도는 학교·도민·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⑥도는 도민이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 이용 정보를 도민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5조(시·군의 책무) ①시·군은 도의 에너지정책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참작하여 시·군 에너지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진다.

②시·군은 도의 에너지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도와 시·군의 시책에 대하여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사업자는 제품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모든 과정을 저소비 고효율형 에너지절약 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된 에너지사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도민·시민단체·학교 및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도민의 권리 및 책무) ①도민은 도의 에너지계획 및 시책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고, 도와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②도민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친화적인 폐기방안의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도민은 도 또는 시·군이 시행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장 에너지 계획 등

제8조(지역에너지 계획) ①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속 가능하며 종합적인 에너지이용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지역에너지 계획(이하 “지역에너지 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지역에너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 추이와 전망
2. 소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
3. 에너지 절약방안 수립 및 에너지이용 효율화시설 확대
4.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보급 확대 계획
5. 에너지이용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
6. 지속 가능한 에너지이용을 위한 대책
7.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
8. 미활용 에너지원을 개발·이용하기 위한 대책
9. 기타 에너지사업 및 에너지시책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도지사는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효율적인 지역에너지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도지사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⑤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에너지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⑥도지사는 도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1월 이내에 도보 등을 통해 도민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9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①도지사는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 계획(이하 “합리화 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합리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절약형 경제구조로 전환을 위한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의 연간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2. 에너지 대체와 관련 기술개발·이용을 위한 연차적 추진사항
3. 에너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리화 계획을 에너지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4장 에너지위원회

제10조(에너지위원회) 도지사는 에너지절약 계획 및 시책의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 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도 소속 공무원, 도의회 의원, 에너지관련 전문기관이나 협회 및 시민단체 등의 관계자로 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정책의 개발 및 평가
2. 지역에너지 계획의 심의
3. 에너지 행정의 민·관 협력 방안 마련
4. 에너지 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4조(회의) ①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보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에너지부문별 시책

제16조(공공부문) ①도지사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관리
2.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건물 신축(증·개축 포함)시 고효율 제품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 사용

3. 전력소비가 많은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절전형 사무용 기기 및 「가전기기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에너지 절약 마크가 표시된 제품 사용

4. 시·군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설치시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사용

②도지사는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시책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1.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의한 에너지 절약 사업 추진

2.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관리 진단 실시

3. 공영 주차장에 대한 10부제 자율참여 제도 및 참여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4. 관용차량 10부제 실시

5.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난방 18~20℃, 냉방 26~28℃)

③도지사는 에너지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토목공사를 계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절약 제품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건물부문) ①도지사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에너지절약 계획서의 제출 등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건축물허가 단계에서부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건축물의 허가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충청북도 건축위원회 또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건축주가 신축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감리 완료보고서에 대하여 「건축법」이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및 에너지절약 계획서 내용이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건축물 개·보수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⑤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및 에너지절약 계획서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건축법」 제23조의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공사 감리자 및 허가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에너지 효율화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지침 또는 안내책자를 발간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⑦도지사는 건축물 사용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절약하기 위하여, 상가 등에서 사용하는 간판의 규격, 수량, 점등시간, 종류 등을 에너지절약시책에 맞도록 관리 할 수 있다.

⑧도지사는 건축물 허가단계에서부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 할 수 있다.

제18조(산업부문) ①도지사는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 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법 제22조의 규정의 의하여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 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사업자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 에너지의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⑤도지사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19조(수송부문) ①도지사는 도시계획·교통계획 및 각종 건설계획이 교통수요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에 준하여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교통수요 증가를 가져오는 도로건설 등 도로공급 위주의 교통투자정책을 지양하고, 수송체계 전반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대중교통 중심의 체계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대중교통의 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누구나 저렴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도시 내외의 화물 운송 및 집배송 체계가 에너지 절약형 체계로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도지사는 백화점 등 대규모 교통유발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 부담금제도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6장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제20조(재정지원) ①도지사는 시·군의 에너지정책 수립 및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민·사업자·민간에너지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발 체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정부와 에너지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 ①정부는 에너지의 수급 안정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의 특성을 참작하여 국가에너지정책의 효과적인 수행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기하기 위한 지역에너지 시책을 강구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③에너지 사용자와 에너지 공급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이용 등에 있어서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에너지사용 기자재 및 에너지공급 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자는 당해 기자재 및 설비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의 개발과 도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 에너지계획)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참작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의 효과적 달성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기하기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너지 계획은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안의 에너지수급 추이와 전망
2. 지역안의 소요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
3. 에너지이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

3의2 지역안의 환경친화적 에너지이용을 위한 대책

3의3 집단에너지사업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

4. 지역안의 미활용 에너지를 개발·이용하기 위한 대책
5. 기타 지역안의 에너지사업 및 에너지시책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에너지시책 및 에너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7조(수급안정을 위한 지시)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국내외 에너지 사정의 변동에 따른 에너지의 수급차질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에너지를 저장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국내외 에너지사정의 변동으로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에너지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에너지사용자·에너지공급자 또는 에너지사용 기자재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다음

각호 의 사항에 관한 조정·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역별·주요 수급자별 에너지 할당
2. 에너지공급설비의 가동 및 조업
3. 에너지의 비축과 저장
4. 에너지의 도입·수출입 및 위탁가공
5. 에너지공급자 상호간의 에너지의 교환 또는 배분사용
6. 에너지의 유통시설과 그 사용 및 유통경로
7. 에너지의 배급
8. 에너지의 양도·양수의 제한 또는 금지
9. 에너지사용의 시기·방법 및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10. 기타 에너지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

제12조의 2(자발적 협약체결기업의 지원 등) ①정부는 에너지 사용자 또는 에너지 공급자로서 에너지의 절약 및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약속(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한 자가 에너지절약형 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방법의 기준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에너지 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①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합리화기본계획에 따라 에너지 이용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및 그 시행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금융·세제상의 지원) 정부는 에너지를 합리화하고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노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설치·시공 그 밖에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 금융·세제상의 지원 또는 보조금의 지급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①제3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자(이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라 한다)가 에너지 절약사업 및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부, 정부가 설치한 기금, 국내외 금융기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1.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용역사업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의 지역)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지역(이하 “공급대상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결과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이 있을 때
3. 기타 공급대상지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환경표식의 인증) ①환경부장관은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자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식의 인증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얻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식의 인증을 위한 대상제품의 선정·폐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건축법

제23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의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3.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4.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5. “생략”

제15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를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자문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권고·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근위원이나 사무직원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